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신청시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희망자 분들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주택동(건물)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2. (주택선택)** 동호지정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 세어형)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단, 세어형은 가족이 아닌 경우 동성(同性)에 한해 가능하며, 주택의 성별(남성, 여성동) 지정시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에 한함)
- 3. (세어형 우선공급)** 세어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단, 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에 한함)
- 4. (쉐어형 입주)** 쉐어형 주택에 다른 계약자가 없이 유일한 계약자일 경우에도 우선 입주가 가능하나, 추후 동호지정에 따라 입주자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5. (재공급)** 선순위 예비자 계약체결 완료 이후 입주 대기 중인 후순위 예비자 등을 대상으로 미계약 동호 등의 재공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6. (입주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1 모집일정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접수 (인터넷)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예비자 순번발표	⇒	계약체결
18.4.30(월)		18.5.28(월)~ 6.1(금)		18.6.7(목)		18.6.8(금) 6.11(월), 6.12(화)		18.7.20(금)		개별안내

* 신청접수 기간에 주택의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가능 주택은 '18.5.24(목) 17시 홈페이지(청약센터-공지사항) 별도 게시 예정

2 모집대상

• 모집대상 예비입주자 : 총 3,561명(붙임의 공급대상 주택동 참조)

청약가능지역	모집대상 예비자수	청약가능지역	모집대상 예비자수	청약가능지역	모집대상 예비자수
강원	100	광주	6	서울	1,085
경기	1,276	대구	48	인천	156
경남	147	대전	212	전북	36
경북	147	부산	276	충북	72

※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등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단, 3순위의 경우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 일정 범위 내에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가능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62,50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3

신청방법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http://apply.lh.or.kr>)→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구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4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1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대학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30.) 현재 청약가능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2018년 복학예정자 · 편입 예정자 포함, 2018년 졸업예정자 · 졸업유예자 제외)으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

타 시, 군 출신 인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해당 가구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 이외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 신청자가 혼인 중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 ※ 신청자가 혼인 중인 아닌 경우로 부모 모두 사망(주민등록 말소 포함) 또는 혼인 중이 아닌 아동 복지시설퇴소자 신청시 타 시, 군 출신 불문
 - ※ 입주대상 주택의 소재지역(시, 군)에 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시 지원 불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교 내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등은 제외
 -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첨부 "지원가능 대학현황('17.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기준)"

■ 취업준비생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30.)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 ② 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 ※ 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또는 신청자가

혼인 중인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군은 신청 불가
 ※ 신청자가 혼인 중인 아닌 경우로 부모 모두 사망(주민등록 말소 포함) 또는 혼인 중이 아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신청시 타 시, 군 출신 불문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p>[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 3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p> <p>[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p>
--

5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 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2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동일순위내 입주자 선정기준

대상		동일순위내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경쟁시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첨)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2순위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첨)으로 선정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3순위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2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50% 이하)		3점 1점
	③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 소득 · 자산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소득기준 금액						(금액단위 : 원)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2,501,295	2,923,452	2,923,452	3,110,003	3,312,90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3,501,813	4,092,832	4,092,832	4,354,004	4,638,06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7,503,885	8,770,355	8,770,355	9,330,008	9,938,715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자산	총 자산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검증대상		□ 소득, 자산(가구원) 산정기준 ·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신청자가 혼인 중인 경우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종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여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단, 대학생 졸업, 취업준비생 취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8.5.28(월)~ 6.1(금) (10:00~16:00)	'18.6.7(목) (17:00이후)	'18.6.8(금), 6.11(월), 6.12(화) (10:00~16:00)	'18.7.20(금) (17:00이후)	대상자 선정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예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으며(인터넷 청약 - 주거복지),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대상자는 '18.6.7(목) 17:00이후 발표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18.6.8(금), 6.11(월), 6.12(화) (10:00~16:00)]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

- 서류제출 장소 : 10번 문의처 참조

* 예비자 순위 발표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주택, 소득, 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 청약 신청기간은 **접수시작일 2018.05.28(월) 10:00부터 마감일 2018.06.01(금)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마감일인 5월 25일은 16시까지임을 유의)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취소 가능)

■ 입주 대기 후순위 예비자 등 재공급 안내

- 신청자격 : 본 입주자모집 공고('18.4.30.)의 선순위 예비자 계약체결 완료로 입주 대기 중인 후순위 예비자 및 낙첨자(예비자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로 부적격이 아닌 자)
- 공급대상주택 : 선순위 예비자 계약체결 종료 후 미계약 세대
- 선정기준 : 최초 신청시 입주순위를 기준으로 전산추첨 후 순번에 따른 동호지정 계약체결
- 접수방법, 일정 및 세부 공급사항은 개별안내 예정

8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18.04.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재학 및 졸업 확인 등)

유형	제출서류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재학증명서 • ('18년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 ('18년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18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통 제출서류(타 시·군 출신 확인 등)

제출서류	대상자 및 발급방법 등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가 미혼으로 등본상 부모 세대분리시) 부모 모두,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등본 추가제출 • (신청자가 혼인 중으로 등본상 배우자 세대분리시)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부모 등본 불필요) 	1통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등본에서 부모 또는 혼인여부(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1통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1통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본상 이혼한 부모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1통

■ 순위별 입주자 자격 요건 확인 구비서류

-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신청시

세부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 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부모, 신청자 각각 인정 가능하나,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신청자의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신청자 작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일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가구, 소득 50% 이하자 가구'로 신청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p>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가구원 전원이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p>자산 보유사실 확인서</p> <p>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p>※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p>	신청자 작성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9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 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개방	• 금회 예비자 모집공고 동호별 주택모집이 아닌 주택동(건물) 모집으로 예비자 선정 이후 주택개방,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단, 대학생이 졸업하거나 취업준비생이 취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단, 소득조건과 관련하여 1, 2순위 입주자가 재계약 시 3순위 자격을 유지한 경우 3순위 임대조건 적용하며, 대학생의 경우 휴학 중인 경우에도 재계약 가능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동호 지정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대상, 금리 및 한도 등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수원시 소재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공고일 '18.4.30.)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주택의 경우 현재 공급호수가 공동거주(2인) 1호로, 공동거주의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동성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선순위 예비자의 성별에 따라 동성의 후순위 예비자에게 입주 순위가 우선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행위, 상습음주 및 흡연, 지인 등의 잦은 방문 등)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LH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우리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청년 매입임대 관련 Q&A 참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대상지역	서류제출 장소	연락처
강원 강릉시	LH 강릉권주거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46 페이토 2층	033-610-5161 033-610-5166
경기 성남시	LH 성남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5, 한서빌딩 9층	031-778-3125
경기 수원시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146 광고 안효회관 11층	031-323-9134 031-323-9137
경기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세교동)	031-377-9707 031-377-9434
경기 용인시, 여주시	LH 용인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구갈동) 소공빌딩 3층	031-280-4734 031-280-4735
경남 진주시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술밭로 121(상대동 285-1)	055-922-1500
광주 북구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83번길 2, 지플레이스 2층	062-456-0224
경북 경주시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명선빌딩2층 (대도동 104-3번지, 명선빌딩2층)	054-280-4763 054-280-4750
경북 구미시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054-450-3800
대구 달서구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유풍빌딩 5층	053-610-9922
대구 남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10층 주거복지사업2부	053-603-2735 053-603-2743
대전 서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1층 행복나눔센터	042-470-0200 042-470-0866 042-470-0867
대전 동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1층 행복나눔센터	042-470-0404
부산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센터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구서동248-10), 현대자동차 3층 (※주차불가능)	051-460-6921 051-460-6922
부산 남구, 사하구, 진구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 5층	051-460-6818, 051-460-6838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중랑구	LH 강북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02-3416-3777 02-6454-2700

서울 금천구	LH 강서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1층	02-3416-3777
경기 의정부시, 포천시	LH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1호선 의정부역 3번출구 전방180m전방, 경전철 의정부역 2번출구 대각선] ※ 주차불가 대중교통이용 바람	031-822-4025 031-822-4026
경기 부천시, 시흥시	LH 부천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6층	032-450-8241, 032-450-8242 032-450-8254 032-450-8260
인천 남구, 부평구, 서구	LH 인천복서권주거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8층	032-717-8502 032-717-8534 032-890-5284 032-890-5285
경기 파주시	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 삼성프라자 6층	031-934-5632
전북 군산시	LH 익산권주거복지센터 임대상담실 전북 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부향 1차 108호	063-840-0927 063-840-0920
전북 전주시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6층(효자동2가 1333-1)	063-230-6185 063-230-6210
충북 청주시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043-290-3884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18. 04. 30.



한국토지주택공사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총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

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차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형태 확인서

(취업준비생의 직장 재직 여부 확인용)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비정규직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단기 또는 임시 고용 <input type="checkbox"/> 채용형 인턴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인턴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근로	
근로기간		201 ~ 201			
근로 계약기간		<input type="checkbox"/> 3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 근로시간		<input type="checkbox"/> 1주 15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신청자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자 근로형태에 대하여 상기 사항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확인자(사용주)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귀하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퇴소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인가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퇴소 사유	
-------	--

상기 대상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4. 30.) 현재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장

직인

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귀하